「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조례」 제정 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

베이비박스 무엇이 문제인가?

실태와 쟁점을 중심으로

일시 **2022년 11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1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공동주최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입양연대회의, 뿌리의집,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인권포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의원, 정의당 강은미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권인숙, 장혜영, 남인순, 진선미, 정춘숙, 송옥주, 유정주, 이탄희, 윤미향, 정찬민, 강훈식, 양정숙 의원)

진 행 순 서

개 회	사회	반철진(입양연대회의 대표)
10:00-10:15	개회 및 인사말	
발 제	좌장	양현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15-10:35	베이비박스의 현황과 관련 쟁점의 검토	소라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10:35-10:50	베이비박스와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의 문제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
10:50-11:05	베이비박스와 미혼모의 인권: 누구를 위한 베이비박스인가?	최형숙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11:05-11:20	입양인 시각에서 바라 본 베이비박스와 입양	민영창 (국내입양인연대 대표)
11:20-11:30	베이비박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	김지연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아동복지정책과 과장)
11:30-11:40	베이비박스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김현강 (서울시 여성정책시 아동정책팀 팀장)
토 론		
11:40-12:00	종합토론/질의응답	

차 례

인 사 말

국회의원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병) 06

국회의원 권인숙(더불어민주당,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대표) 08

국회의원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10

국회의원 강은미(정의당) 12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14

발 제

베이비박스의 현황과 관련 쟁점의 검토 소라미(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18

베이비박스와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의 문제 강미정(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 33

베이비박스와 미혼모의 인권:
누구를 위한 베이비박스인가? 최형숙(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49

입양인 시각에서 바라 본 베이비박스와 입양 민영창(국내입양인연대 대표) 59

/01/

인 사 말

국회의원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병)

국회의원 권인숙(더불어민주당,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대표)

국회의원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은미(정의당)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병)
남인순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입니다.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의 제안으로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조례」 제정 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 – 베이비박스 무엇이 문제인가?"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주최해주시는 입양연대회의, 뿌리의집,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위원회,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인권포럼과 양이원영·강은미·용혜인 의원님과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된 아동의 숫자는 총 2,783명이었습니다. 영아 유기의 주된 동기는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갈등, 혼인 외 출산, 양육자 부재 또는 단독 양육의 어려움, 출생신고 곤란 등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원인을 들 수 있으며, 이미 우리 형법이 이를 영아유기죄로 처벌하고 있음에도 영유아 유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그 동기에 있어서 오로지 개인만을 탓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제6조),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되어야 하고,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제7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UN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익명으로 아동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고,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발제에서 인용한 베이비박스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비박스를 찾기 전 부모들은 많은 옵션을 알아보고 그 중에 최선의 선택으로 베이비박스를 '선택'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를 찾은 여성들은 더 나은 선택지가 있었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베이비박스 설치를 논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과연 아동의 인권 보장에 있어 안전한 임신과 출산, 실질적인 양육체계에 대한 인프라 등 제도 마련을 충분히 했는지부터 성찰해야 합니다.

비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베이비박스를 찾아 아이를 유기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그대로 둔 채, 아동이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순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명시한 헌법적 가치와 현행법 체계에 명백히 위배되는 조치를 국가가 나서서 할 순 없습니다.

비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사회가 먼저 만들어져야 하며,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여성의 자율적인 삶의 선택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오늘 좌장을 맡으신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감사드리며, 패널로 참여해주시는 소라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님,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님, 최형숙 인트리 대표님, 민영창 국내입양인연대 대표님, 김지연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님, 김현강 서울시 아동정책팀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많은 고견을 듣고,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건강과 행복, 평화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대표)
권인숙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인권포럼 대표 권인숙 의원입니다.

베이비박스 문제를 놓고 긴급간담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위기영아보호라는 명목으로 한 지자체에서 베이비박스 지원 조례제정이 추진됐고, 시급히 전문가분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작년 8월 미신고아동복지시설 토론회에서도 베이비박스 문제를 다루었는데, 지난 1년여 동안 제도개선은커녕 아동 인권에서 뒷걸음질 치는 조례까지 나오게 되니 국회의원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사안의 심각성과 시급성에 공감하며 여러 단체들이 공동주최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인트리를 비롯해 입양연대회의, 뿌리의집,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인권포럼에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소속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뜻을 모아주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남인순, 양이원영, 강은미, 용혜인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베이비박스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핵심 근거는 영아 유기나 살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외 연구결과 모두에서 영아 유기·살해 건수와 베이비박스 운영은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신고시설인 베이비박스는 결코 아동 인권을 담보할 수 없으며, 베이비박스를 찾게 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효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합니다.

한편 베이비박스의 대안으로 익명출산제가 거론되기도 하지만, 익명출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우리와는 제도적·법적 기반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두 국가 모두 양육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갖춰져 있으며,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혼외 출산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고 아

동의 출생등록권을 보장하는 등 기본적인 사회안전망과 제도를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성교육이 체계화되어야 하고, 임신중단권 등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간담회가 베이비박스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아동과 여성 모두의 인권을 위해 실효적 대안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긴급하게 마련된 자리에 기꺼이 참여해 주신 학계와 현장, 정부부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을 바탕으로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 입법과 제도개선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안녕하십니까?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조례' 제정 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 개최를 환영합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노력해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과 10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도시위원회는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공청회'를 두 차례 진행했습니다. 베이비박스가 공식 조례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그 명과 암을 제대로 조명하고 보다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베이비박스는 우리나라가 1991년에 가입한 UN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가능한 한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받을 권리가 있으며(제7조),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경우 이외에는 아동이 부모와 분리되지 않도록(제9조) 규정하는 등 아동의 원가정보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11년 8월 체코에 베이비 박스를 중단시키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이비박스 아이들의 출생신고가 미뤄지며 예방접종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베이비박스의 아이들의 현실적인 문제도 집중해야 합니다.

더 이상 보호출산과 익명출산이 미혼모를 보호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혼모에게 정말 필요한 복지 정책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그들이 베이비박스를 찾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열리는 간담회가 매우 뜻깊습니다.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동의 배경, 베이비박스와 아동 생명권의 관계, 베이비박스 이후 아동의 보호 실태, 미신고시설로서 베이비박스의 문제점, 베이비박스의 대안 등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다양한 주제와 그 대안까지 깊이 있게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정부를 비롯해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 패널분들이 들려주시는 고견을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정의당)
강은미

반갑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아동은 원칙적으로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지며, 제9조 원가정으로부터의 분리는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동 중 80% 이상이 대규모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되는 반면 입양 또는 가정보호의 비중은 20%에 불과합니다. 시설보호가 우선시 되는 상황은 아동호보호기준에 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2009년에 베이비박스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필요성과 지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의 재생산권이 안전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가 도입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다양한 고견과 국내의 미비한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토론회를 위해 함께 해주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님과 양이원영 의원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님,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을 비롯하여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입양연대회의, 뿌리의집,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인권포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발제와 토론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아동생명권과 여성

의 재산상권이 보장되는 돌봄 정책이 더욱더 강화되고, 원가정보호 원칙이 우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인사말 | 01

국회의원(기본소득당)
용혜인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베이비박스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비박스를 찾았던 340건의 사례 중 33.8%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아이를 기르는 데에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오래된 격언과 달리, 여전히 양육에 드는 자원을 양육자 개인이 감당할 것을 요구 받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인 동시에 한 명의 양육자입니다. 출산 이후, ‘국회 내 아이동반법’ 발의를 시작으로, 아동돌봄체계 개선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긴급 간담회〉 역시 아동돌봄체계의 사각지대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절실히 필요한 간담회라고 생각합니다.

발제자 분들이 강조하신 것처럼, 저 역시 아동을 가급적 원가정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양육자가 사회경제적 이유로 아동에 대한 양육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국가의 양육지원체계가 보다 촘촘하고 평등해져야 할 것입니다. 원가정에서 유기한 이후에 개입할 것이 아니라, 원가정 양육 지원, 피임교육 및 여성의 임신중절권 보장 등 예방적 개입이 중요하다는 점에 깊게 공감합니다.

제21대 국회에서 베이비박스의 대안으로 제시해주신 익명출산제(보호출산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나아가, 원가정 분리가 불가피한 아동 역시 적절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아동복지시설과 입양시설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긴급 간담회가 일개 미신고시설에 아동의 삶을 떠넘기는 ‘베이비박스’가 아닌, 공적 아동돌봄체계 강화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말 | 01

유의미한 논의를 제안하고 함께 만들어주신 변화된미래를 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동료 의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02/

발 제

베이비박스의 현황과 관련 쟁점의 검토	소라미(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베이비박스와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의 문제	강미정(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
베이비박스와 미혼모의 인권: 누구를 위한 베이비박스인가?	최형숙(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입양인 시각에서 바라 본 베이비박스와 입양	민영창(국내입양인연대 대표)

발제1 베이비박스의 현황과 관련 쟁점의 검토

소라미(임상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도시위원회의 주최 및 주관으로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공청회’가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조례제정 공청회를 거쳐 제안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동의 배경, 베이비박스와 아동생명권과의 관계, 베이비박스 이후 아동의 보호실태, 미신고시설로서 베이비박스의 문제점, 베이비박스의 대안으로 논의되는 것들에 대한 쟁점을 검토하겠다.

1.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의 문제점

2022. 10. 14.에 진행된 공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이라는 명칭의 조례안이 제시되었다. 2022. 8. 23.에 진행되었던 1차 공청회의 제목이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공청회」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예정했던 조례안의 제목은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조례”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2차 공청회에 이르러 조례안의 명칭이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베이비박스’명칭을 ‘위기영아 보호상담지원’으로 대체한 것이다. 베이비박스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우회하고, 위기영아를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는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명분을 앞세워 조례 제정을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1) 원가정보호의 원칙 위반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가능한 한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받을 권리가 있으며(제7조),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경우 이외에는 아동이 부모와 분리되지 않도록 보장하도록(제9조) 규정하여 아동의 원가정보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2009년 유엔총회결의로 채택된 '유엔 아동대안양육에 관한 지침'은 가정에서 아동을 분리하는 것은 가장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고 가능한 일시적이고 단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한다(제14조). 이러한 원가정보호의 원칙은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도 반영되어 있다(제4조 제4항)

동 조례안은 "위기영아의 보호와 상담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영아의 생명권과 인권 보장"을 하고자 한다고 목표를 밝히고 있다(제1조). '위기영아'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사유로 출생하여 원가정과 분리되거나 유기의 위험성이 큰 아이"를 뜻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2호). 위기영아의 발생에는 친생부모의 존재가 필연적이나, 목적조항과 위기영아에 대한 정의 규정에서 친생부모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동 조례안은 원가정 분리가 불가피한 위기아동의 발생을 전제로 하고 분리와 유기 이후의 개입(아동의 보호와 치료 등)에 주력하고 있을 뿐, 위기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 원가정에서 아동이 보호·양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개입에 대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담고 있지 않다.

조례안 제4조는 '위기영아보호상담지원센터'의 업무 중 하나로 "위기영아의 부모에 대한 상담 지원"업무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상담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가정 양육지원을 위한 공적 지원과 민간 지원의 연계, 일시적인 시설보호나 가정위탁 등 공적인 아동보호체계로의 연계 등의 내용을 충실히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상담은 담당 업무를 관장하고 민·관과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적 기관에서 수행하여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부모에 대한 상담과정이 원가정보호의 원칙을 충실하게 실현하지 못한다면, 이는 아동분리를 위한 형식적인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위기아동의 원가정으로부터의 분리를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위기아동의 보호와 치료적 개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원가정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2) 민간에 의한 아동의 원가정 분리조치는 현행 아동복지법상 보호절차에 위배

조례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위기영아'규정이 적용되려면 대상아동은 "불가피한 사유"로 출생하여 "원가정과 분리되거나 유기의 위험성이 큰"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제2조). 그런데 어느 경우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출생에 해당하는지 또한 언제가 원가

정과 분리되거나 유기의 “위험성이 큰” 경우인지에 대하여 누가 어떻게 판단할지 조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심사주체나 절차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한 결정은 조례안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위기영아보호상담지원센터’[1]에서 맡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 아동최선의 이익의 원칙을 기반으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상(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12조) 아동보호절차와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일개 민간 센터가 아동의 원가정으로부터의 분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을 담보할 수 있는 공적 절차를 배제하는 것으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도 위배된다. 아동과 관련된 모든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아동복지법 제2조 제3항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복지의 기본이념이다.

(3)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의 침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갖는다고 규정하여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제7조). 우리나라 대법원 또한 최근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0. 6. 8. 선고 2020스575결정).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대법원에서 보장하는 ‘출생등록 될 권리’란 자신의 친생부모와 태어난 일시, 장소 등이 사실대로 충실하게 기록된 권리를 뜻한다.

그런데 동 조례안은 출생 후 1년 미만의 위기 영아를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 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되거나 유기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어, 친생부모에 의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보호 의뢰되는 경우가 다수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에서는 위기영아의 출생신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의 침해가 우려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은 총 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조는 목적, 2조는 정의 규정, 3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4조는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하여, 5조는 위탁운영의 근거를, 6조는 협력체계의 구축에 대하여, 7조는 종사자의 비밀 준수 의무에 대하여, 8조는 시행규칙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위기영아보호상담지원센터’는 동 조례안에서 소개되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2. 베이비박스의 실태

사실 위 조례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베이비박스'를 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이다. 2009년도 관악구 소재 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베이비박스는 아동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당위를 내세워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고 언론에도 집중적으로 소개되었다. 그 결과 전국에 유기되는 아동 중 다수의 아동이 서울로, 특히 베이비박스로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전국에서 유기로 인해 발생하는 요보호아동 중 서울에서 유기된 아동의 비율은 2008년 14.4%, 2009년 25.7%, 2010년 22.5%, 2011년 32.1%, 2012년 62.6%, 2013년 83.9%, 2014년 81.2%, 2015년 60.4%, 2016년 62.5%, 2017년 57.5%로 베이비박스로 인해 아동유기가 서울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2)]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국	202	222	191	218	235	285	282	321	264	261
서울	29	57	43	70	147	239	229	194	165	150
지역	173	165	148	148	88	46	53	127	99	111
베이비박스	0	0	4	24	67	224	220	206	168	133

〈유기로 인한 요보호아동 발생 건수〉[3)]

전국 유기아동의 통계를 보면 관악구 소재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동의 숫자가 증가됨에 따라 서울 지역의 유기아동 숫자가 급증하는 반면 지역에 유기되는 아동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2013년과 2014년에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숫자가 정점을 찍은 후 이후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는 데 이에 따라 다시 지역에 유기되는 아동의 숫자가 회복하여 증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를 통하여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베이비박스가 존재함으로써 지방에서 유기될 영아가 서울에서 유기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만약 서울에 베이비박스가 없다면 해당 아동은 지역에서 유기(살해되는 것이 아니라)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2) 김선희, 김현준, "입법 공백과 가치 상충의 딜레마: 베이비박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제31권 제2호, 2019, 372면.
3) 김선희, 김현준, 위 논문, 같은 면.

(1) 베이비박스는 아동살해를 막는 장치인가

베이비박스의 필요성에 동의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논거는 베이비박스가 아동살해를 방지하고 아동의 생명권을 구한다는 것이다. 즉 영아살해의 위험으로부터 신생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베이비박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생아의 살해나 유기 건수가 베이비박스 등이 설치되기 이전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지 않았고 따라서 베이비박스 등이 아동의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효과가 적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4] 미국의 경우, 피난처(Safe Haven)로 지정된 곳에 익명으로 신생아를 맡길 수 있는 제도가 1999년 텍사스 주법에 규정된 이래 5년 만에 47개 주로 확산되어 현재 시행 중이다.[5] 그러나 피난처 제도의 도입으로 영아살해 또는 신생아 유기가 감소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난처 도입 이후로도 신생아 살해나 영아 유기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 건수에 비해 피난처에 아동이 맡겨지는 건수는 소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6]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영아살해 건수	12	18	12	16	7	11	16	7	8	7	8

우리나라의 영아살해 통계를 보더라도 베이비박스가 운영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영아살해 숫자와 베이비박스 운영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7] 따라서 베이비박스가 없었다면 영아의 생명을 잃는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가정에 불과하다.

한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의 통계를 분석한 '베이비박스 프로젝트 보고서'는 베이비박스 아동들은 '버려진'아동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8] 친생부모들이 전국에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곳을 찾아 베이비박스를 찾아왔다는 것이다. 심지어 제주도에서 16시간 동안 배를 타고 서울의 베이비박스까지

4) 신동현, 독일에서의 베이비박스와 비밀출산법제, 비교사법 제22권 제4호, 1875면.
5) 권재문, "입양특례법 재개정론과 익명출산제도",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2013), 18면
6) 권재문, "입양특례법 재개정론과 익명출산제도",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2013), 24면
7) 영아살해 통계의 출처: https://www.sisaweek.com/news/curationView.html?idxno=139335와 https://news.zum.com/articles/8878770
8) 베이비박스 프로젝트 팀, "베이비박스 프로젝트 보고서" https://btob.or.kr/26/?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9395090&t=board

찾아온 사례도 존재했다. 베이비박스 프로젝트 보고서는 베이비박스를 찾기 전에 부모들은 많은 옵션을 알아보았고 그 중에서 최선의 선택으로 베이비박스를 '선택'한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아동의 보호를 위해 최선의 선택지로서 베이비박스를 찾은 부모가 베이비박스라는 선택지가 없었을 경우 아동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도록 두었을 리는 만무하므로 베이비박스가 없다면 아동은 살해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의 근거는 깨진다.

(2) 베이비박스 '이전'의 상황

위 베이비박스 프로젝트 보고서는 베이비박스를 찾아온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베이비박스를 찾았던 총 340건의 사례 중 33.8%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거주불안정의 문제까지 맞물려 가지고 있었다. 또한 베이비박스를 찾은 부모 중 24.5%가 한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부모나 친척, 친구, 지인 등 주변에 도움이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청소년 부모의 경우에는 임신과 피임의 무지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임신을 하게 된 결과 양육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장애를 가진 아동은 6.64%로 많지 않았는데 베이비박스를 찾은 이유에 대하여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입양기관에서 장애를 이유로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외 혼인관계 외에서 자녀를 출생하거나 원치 않는 성관계로 인한 임신과 출산인 경우도 소수 존재했다. 베이비박스를 찾게 된 원인을 하나하나 규명하고 각 원인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아감으로써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의 대책을 강구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베이비박스를 찾는 문제는 저소득 가정이나 한부모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대책을 실질적으로 확충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최근 한부모 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제도는 단시간 내 급증해왔다. 하지만 아직 충분치는 않다. 갑작스러운 임신과 출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피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아동복지시설과 입양시설에서 보호를 거부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명백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차별적이고 불법적인 관행을 바로잡고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복지 접근성을 평등하게 보장하도록 복지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의 경우 베이비박스가 어떠한 사회적·제도적 환경 속에서 이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에 100여 개의 베이비박스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독일의

경우, 베이비박스를 허용하고 있는 함부르크주의 조사에 의하면, 아이를 유기할 수밖에 없는 곤경에 처한 여성들은 주로 불법체류외국인 여성, 마약중독자, 성범죄나 가정폭력 피해자, 어린 10대 여성들이다.[9]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독일의 경우 영아 유기의 사유에 '미혼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10] 독일 전체 출생자 중 혼외자가 약 30%를 차지하는데, 사회적으로 법제도적으로 혼외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혼인 외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충실하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11]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베이비박스를 찾아 아이를 유기하는 한국의 현실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3) 베이비박스 '이후' 아동보호의 실태

베이비박스에 아동의 보호를 의뢰한 부모와 베이비박스를 지지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동이 이후에도 베이비박스 운영기관에 의해 가족과 같은 보살핌을 받을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실제는 기대와 다르다.

〈베이비박스 아동 보호 절차, 출처: 주사랑공동체 홈페이지〉

9) 서종희, "입양특례법상 입양시 아동의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법 상 출생신고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2014), 23면
10) 서종희, "입양특례법상 입양시 아동의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법 상 출생신고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2014), 23면
11) 서종희, "입양특례법상 입양시 아동의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법 상 출생신고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2014), 23면

베이비박스에 아동이 유기된 후 운영기관은 경찰에 유기아동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가 이루어지면 관악구청은 베이비박스를 방문하여 아동을 인수하여 서울시립 어린이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로 일시보호를 의뢰한다. 이후 베이비박스 아동은 서울시 산하 보육원 등 아동양육시설로 배치되어 시설에서 장기간 동안 생활하게 된다.[12)]

서울시아동복지센터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서울시아동복지센터에 입소한 총 613명의 베이비박스 아동 중 602명인 98%가 아동양육시설로 보호의뢰 되었고, 9명은 원가정 복귀, 입양 1명, 사망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13)] 2020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베이비박스 아동의 80%가 시설에서 장기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에 베이비박스로 유기된 아동 962명 중 99.6%(929명)가 아동양육시설로 보호 의뢰되었고, 3.4%인 33명만이 입양 또는 가정위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양육시설에 보호된 아동이 사후적으로 가정보호로 변경된 것은 총 128명에 불과해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 중 80.5%인 748명이 성인이 될 때까지 시설에서 살아가는 실정인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원칙적으로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지며(협약 제7조), 원가정으로부터의 분리는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제9조). 2009년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유엔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에서는 가정에서 아동을 분리하는 것은 가장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고 가능한 일시적이고 단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제14조), 시설 양육은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아동 개인에게 유익한 때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 22조).

그런데 서울시아동복지센터 보고와 2020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동 중 80% 이상이 대규모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되는 반면 입양 또는 가정보호의 비중은 20%에 불과하여, 시설보호가 우선시되는 상황으로 국제인권규범이 제시하는 아동보호기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12) 주사랑공동체 홈페이지, http://www.godslove.or.kr/kor/html/business/baby02.asp
13) 김형모, "베이비박스의 실태와 대안", 동광, 112호, 2017년, 9면.

3. 미신고시설인 베이비박스의 문제점

현행 아동복지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50조 제1,2항).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아동복지법 제50조 제4항), 시설 설치 기준 등을 규율하고 있는 것은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위생적이고 그 환경이 아동의 복리에 적합하도록 하고자 한 배경에서이다.[14]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인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 설치 기준, 아동복지법상 요구되는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와 같은 각종 책무 규정에서 배제된다.[15] 따라서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제로 운영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과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취지는 시설입소아동의 복지와 권익을 시설 운영자와 종사의 선의에만 맡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신고가 필요한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전담기구가 규정되어 있다(아동복지법 제52조). 베이비박스가 위 아동복지시설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 설치와 운영을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가 필요하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사랑공동체는 홈페이지에서 영아'긴급보호'와 '수탁보호'를 베이비박스의 사업으로 소개하고 있다.[16] 영아긴급보호 사업에 대해서는 "부모의 피치 못할 사정 또는 아기의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유기 위험에 처해져 있는 아기를 긴급 구제하여 보호"하고 긴급보호의 대상은 "친부모가 양육을 포기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기들"이며, 베이비박스는 "이 아기들을 1~7일 보호한 후"절차에 따라 국가에 인도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영아 수탁 보호"에 대하여는 "친부모가 아기를 양육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나 당장 아기를 양육할 형편이 못되는 경우, 주사랑공동체는 상담을 통해 아기를 수탁하여 보호"하며 "영아 수탁 보호는 친부모가 출산 직후의 힘든 상황에서 양

14) 강정은,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사례로 살펴 본 아동보호체계의 공백",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문제로 바라본 아동보호체계의 공백」 국회토론회 자료집, 2021. 17면.
15) 강정은, 위 발표문, 16면.
16) 주사랑공동체 홈페이지, http://www.godslove.or.kr/kor/html/business/baby02.asp

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단기(1개월~6개월)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베이비박스의 영아 긴급보호 사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일시보호시설'의 업무에, 영아수탁보호 사업은'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일시보호시설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뜻하며(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2호), 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센터를 뜻한다(아동복지법 제42조). 그렇다면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아동복지시설의 성격을 갖는 베이비박스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고를 필해야 한다. 하지만 주사랑공동체는 베이비박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베이비박스는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미신고시설인 것이다.

아동복지법은 미신고시설을 설치·운영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3항 제3호). 나아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장의 교체,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아동복지법 제56조 제1항 제7호). 베이비박스는 미신고시설에 해당하여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 규정에 따라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장관과 서울시장은 베이비박스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의식하여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

4. 베이비박스의 대안 검토

(1) 익명출산제(보호출산제)의 검토

베이비박스에 대한 대안으로 익명출산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가 원천적으로 박탈되는 베이비박스보다는 친생모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최소한 보장될 수 있는 익명출산제가 보다 아동권리에 부합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친생모가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출산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로 독일과 프랑스가 꼽힌다. 독일의 경우,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임신여성 지원확대 및 신뢰출산에 관한 개정법률'에 따라 친생모가 '신뢰출산'을 선택하면 병원에서 가명으로 출산이 가능하며 친생모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별도의 봉투에 밀봉되어 국가기관에서 보존한다.[17] 자녀가 16세가 되면 친생모에 대한 인적 사항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친생모가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정보의 열람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18] 프랑스의 경우, 임신여성이 익명출산을 요구하는 경우 입원비와 출산비를 전액 사회보조금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19] 각 나라에서 익명출산이 제도화된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우리나라 상황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을 주목해야 한다. 신생아에 대한 출생기록제도의 형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정도, 미혼모의 출산에 대한 지원, 양육미혼모에 대한 지원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 익명출산제도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함의를 고민해야 한다.

우선 독일과 프랑스는 출생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의사) 등에 대하여 3일 내 출생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프랑스민법 제55조, 제56조).[20] 의료기관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21] 독일에서는 출생 후 7일 이내 아동의 부 또는 모 등이 출생지역의 등록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출생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병원이나 조산사가 있는 기관에서 출생한 경우, 해당 기관이 출생등록에 대한 의무를 진다.[22] 의료기관에게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출생한 아이들이 누락 없이 사회의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엄격한 출생등록제하에서 곤궁에 처한 임산부에게 안전한 출산을 보장하기 위한 비상구로서 익명출산제도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의 자의적인 신고에 맡겨둔 출생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정확한 출생신고에 대한

17) 김삼용, "베이비박스와 익명의 출산 -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54권 제4호 (2013), 319면
18) 김삼용, "베이비박스와 익명의 출산 -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54권 제4호 (2013), 319면
19) 서종희, "입양특례법상 입양시 아동의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법 상 출생신고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2014), 11면
20) 서종희, "입양특례법상 입양시 아동의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법 상 출생신고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2014), 4면
21) 서종희, "입양특례법상 입양시 아동의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법 상 출생신고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2014), 4면
22) 김철효 등,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 세이브더칠드런 연구보고서(2013), 90-01면

담보가 어렵다. 그 결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수차례 출생등록제의 도입을 권고받았다. 출생등록제의 도입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익명출산제도 도입의 논의는 익명출산제의 필요성이 유래된 주요한 사회적 조건을 간과한 것으로서 적절치 않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양육미혼모에 대한 지원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 미혼모가 아이를 직접 키울 경우 미혼모 당사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6세 이하 자녀와 함께 넓이 60㎡ 주택에 거주하는 미혼모는 규정 급여 104만원과 주거비 50만원, 난방비 10만원 등 월 164만원의 급여를 정부로부터 받는다고 한다.[23] 또 13세 이하 자녀 2명과 함께 넓이 80㎡ 주택에 사는 미혼모의 경우 매달 216만원을 지원받아 생활할 수 있다.[24] 독일은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10대 미혼모의 교육권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독일 대부분의 주는 모성보호법에 근거해 임신에 따른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거나 휴학으로 처리하는 등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25] 또한 미혼모 자신이나 그 자녀가 교육을 받지 못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26] 프랑스의 경우 2006년 적법한 출산과 혼외 출산을 구별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조치를 취해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차별을 철폐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조건만으로 가족수당, 자녀 양육수당,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보육서비스 등의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미혼모 가정 자녀에게는 '요보호아동수당'으로 기본가족급여의 22.5%인 13만원을 제공하며 한부모 가족의 최소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한부모가족급여'등 특별급여를 제공하고 있다.[27] 한부모가족급여는 가구소득이 없는 임산부일 경우 86만원, 자녀가 1명인 한부모 가구는 114만원을 지급한다.[28]

우리나라와 대비되는 상황은 독일의 경우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동 중 미혼모 출신인 경우가 없다는 점에서도 극명히 드러난다.[29] 미혼모에 대한 차별의 해소, 미혼모 가정에 대한 양육지원의 실질화에 대한 방안 없이 익명출산제도만을 논하는 것은 매우

23) 연합뉴스, 2010. 7. 12. "〈대한민국 미혼모 보고서〉 ⑦선진국의 지원책
24) 연합뉴스, 2010. 7. 12. "〈대한민국 미혼모 보고서〉 ⑦선진국의 지원책
25) 연합뉴스, 2010. 7. 12. "〈대한민국 미혼모 보고서〉 ⑦선진국의 지원책
26) 연합뉴스, 2010. 7. 12. "〈대한민국 미혼모 보고서〉 ⑦선진국의 지원책
27) 연합뉴스, 2010. 7. 12. "〈대한민국 미혼모 보고서〉 ⑦선진국의 지원책
28) 연합뉴스, 2010. 7. 12. "〈대한민국 미혼모 보고서〉 ⑦선진국의 지원책
29) 서종희, "입양특례법상 입양시 아동의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법 상 출생신고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2014), 23면

우려스럽다. 과거, 우리나라 정부가 고아나 기아를 돌볼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입양을 아동보호대책으로 우선 설계한 이래 입양제도가 수십 년 동안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복지 정책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전철을 되밟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익명출산제가 도입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사회적 논쟁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1900년도 초반에 오랜 전통이었던 베이비박스를 금지하며 익명출산제도를 고안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30] 익명출산제를 도입한 이래 프랑스에서는 이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끊이질 않았다. 익명출산제도가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출생을 알 권리'를 전면적으로 차단했기 때문이다.[31] 나아가 친생부의 인지권과 충돌한다는 점도 문제가 되었다.[32] 매년 익명출산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임신출산을 폐지하라는 시위를 열었다.[33] 결국 자녀의 출생신분을 알 권리와의 조화를 위하여 2002년 1월 22일 '사회적 행위와 가족법'을 제정했다.[3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에 대한 국가위원회'를 설립해서 익명 출산모로 하여금 자녀의 출생의 배경, 출산모와 혈연부의 의학적, 유전적 특징 등과 같이 자녀의 정체성 형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누가 출생모인지 식별하기에 부족한 '비식별' 정보를 국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35] 또한 익명출산모는 별도로 자신의 인적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밀봉된 봉투에 넣어 국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36] 국가위원회는 자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식별 정보를 제공하며 식별정보에 대하여는 익명출산모의 동의를 얻어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37] 프랑스에서의 익명출산제도의 변천은 익명출산제도가 얼마나 뜨거운 논쟁거리인지 보여준다.

(2) 여성의 재생산권으로서 임신중단 권리의 보장

베이비박스 또는 익명출산이 필요한 배경으로, 사회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영아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는 공개할 수 없는 수치심으로 인하여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30) 권재문, "입양특례법 재개정론과 익명출산제도",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2013), 11면
31) 권재문, "입양특례법 재개정론과 익명출산제도",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2013), 12면
32) 권재문, "입양특례법 재개정론과 익명출산제도",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2013), 13면
33) 오마이뉴스, 2007. 6. 23. "낳자마자 버리는 X출산, 필요악인가"
34) 서종희, "입양특례법상 입양시 아동의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법 상 출생신고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2014), 17면
35) 서종희, "입양특례법상 입양시 아동의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법 상 출생신고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2014), 17면
36) 서종희, "입양특례법상 입양시 아동의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법 상 출생신고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2014), 17면
37) 권재문, "입양특례법 재개정론과 익명출산제도",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2013), 11면 14면

수 없는 상황이 주로 언급된다. 즉 원치 않는 아동을 출산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베이비박스 또는 익명출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신·출산을 거친 여성이 이후에 아동을 포기·유기하겠다는 결정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과정일지, 그 선택 이후 여성의 삶에 평생 드리우게 될 심적 고통과 트라우마는 어떠할지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 익명출산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측에서도 익명출산을 통해 여성의 인격권·행복추구권·재생산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여성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거쳐서 익명출산까지 오기 이전 단계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여성의 재생산권이란 여성의 피임, 임신, 출산에 관한 선택권 및 성관계, 피임, 임신, 임신중절, 출산, 양육 전반에 관한 결정권 등 여성의 삶의 맥락에서 성과 재생산에 관한 종합적인 건강 권리를 뜻한다.[38] 즉 임신을 중단할 권리와 출산 및 양육을 선택할 권리는 모두 여성의 재생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 영아 유기 이전에, 출산 이전에,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여성의 재생산권이 안전하고 충분하게 보장된다면 익명출산이 논의되는 상황은 대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익명출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이미 수십 년 동안 여성의 임신중단권이 보장되어 왔다. 프랑스의 경우 46년 전에 임신중지를 합법화한 이래 의료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미성년자의 임신중지를 지원하였으며 최근에는 임신중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을 도입하였다.[39] 독일의 경우 1970년대부터 부분적인 임신중단을 허용하여 낙태 시술 3일 전에 상담을 한 후 상담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임신 12주 이내에는 낙태가 허용되도록 하되, 의학적인 사유와 강간 및 성범죄인 경우에는 상담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하고 있다.[40] 우리나라에도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41] 이후 임신중단의 사유, 절차,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제도의 설계와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빠른 시일 내에 여성의 재생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임신중단 관련 제도가 도입·시행된다면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한 임신과 출산, 이후

38) 전윤정, “성·재생산권으로써 낙태권리를 위하여”, 페미니즘연구 제20권 제1호, 2020, 11면.
39) 전윤정, “프랑스 임신중지 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제18권. 2021. 54면.
40) 정현미, “낙태규제에 있어서 형법의 효용성”,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6권 제2호, 2011. 142면.
41) 2019. 4. 11. 헌법재판소가 자기낙태죄인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의사에 의한 낙태죄인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17헌바127)을 하였으나 법률개정시한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의 입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21. 1. 1.부터 형법 제269조 제1항 자기낙태죄와 제270조 제1항 의사에 의한 낙태죄는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베이비박스로의 아동 유기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5. 나가며

베이비박스 필요성의 강력한 논거인 베이비박스가 영아살해를 방지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가설에 불과하다. 베이비박스에 보호의뢰 된 아동 대부분이 이후 보육원과 같은 아동양육시설에서 장기보호되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채, 만연히 베이비박스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여 이를 공적으로 지원하는 조례의 제정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베이비박스와 익명출산제도는 혼인외 자녀의 임신과 출산은 제거되고 은폐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을 강화하거나 확산시키는 결과를 야기하여 여성의 재생산권을 침해할 소지를 내포한다. 원치 않는 임신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중단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출산을 선택한 경우에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신과 출산 전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출산으로 인하여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양육을 선택한 경우에는 실효성 있는 양육지원 제도가 확충되어야 한다. 입양을 선택한 경우에는 공적기관에 의한 입양 전 상담이 담보되어야 하며, 입양과정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익명출산제도의 도입은 여성과 아동의 인권의 관점에서 예외적으로 최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제도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 임신중단을 선택할 권리의 보장, 한부모의 양육에 대한 충분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익명출산제도가 마치 모든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단순하게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는 출산 방식에 대한 논의로 한정해서는 안되며, 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산부들이 어떻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재생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인가의 논의로 확장되어야 한다.

발제2 베이비박스와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의 문제

강미정(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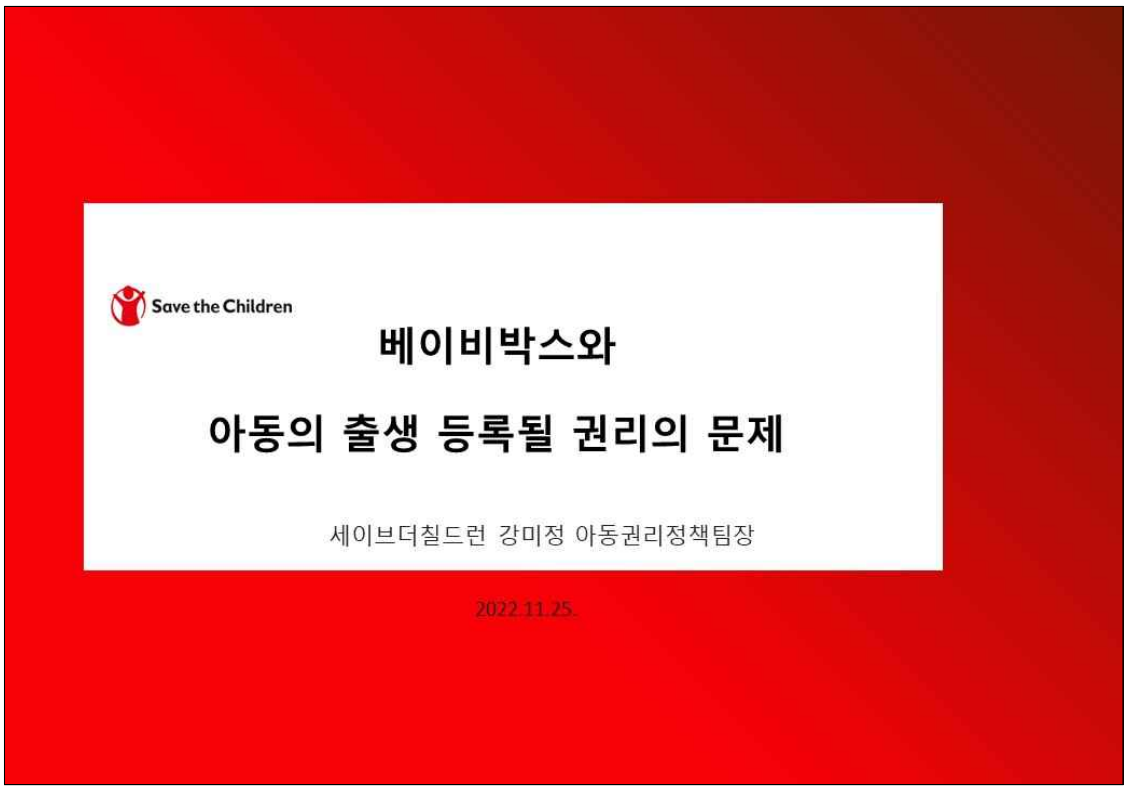

1. 국제인권규범에서의 아동의 권리

2

유엔아동권리협약

■ **제3조**

1. 공공·민간 사회복지기관, 법권, 행정당국, 입법당국 등은 아동과 관련된 활동을 함에 있어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및 기타 아동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해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입법적, 행정적으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Save the Children

3

유엔아동권리협약

■ **제7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하며, 가능한 한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아야 한다.
2. 당사국은 국내법 및 관련 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국적 없는 아동의 경우 보다 특별한 보장을 해야 한다.

■ **제8조**

1. 당사국은 이름과 국적, 가족관계 등 법률에 의해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2. 아동이 자신의 신분 요소 중 일부나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해당 아동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적절한 원조와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Save the Children | 4

유엔아동권리협약

■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법정 후견인, 다른 보호자로부터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 속에는 아동 및 아동의 양육책임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 계획의 수립과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다른 형태의 방지책, 학대 사례를 확인·보고·조사·처리·추적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적 개입이 가능한 효과적인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Save the Children | 5

장애인권리협약

■ 제18조(이주 및 국적의 자유)

2. 장애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며, 출생 시부터 이름을 가질 권리, 국적을 취득할 권리 및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그 부모에 의하여 양육될 권리를 갖는다.

Save the Children | 6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7호(2005)

3. **유아는 권리의 보유자이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특별히 법으로 성인 연령이 이전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제1조). 결론적으로 유아는 협약에서 부여된 모든 권리의 보유자이다. 그들은 특별한 보호 조치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들의 변화하는 능력에 따라 그들의 권리를 점진적으로 행사할 권리가 있다...위원회는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및 상호의존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아동권리협약이 유아기에 전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재확인 한다.

16. 부모/주요 양육자와 아동의 최선의 이익. 부모 및 그 밖의 주요 양육자에게 부여된 책임은 그들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 내에서 행동하라는 요구와 관련되어 있다. 제5조는 부모의 역할이 "협약 내의 아동의 권리의 실현"에 있어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아동의 연령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적용된다.

Save the Children | 7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7호(2005)

신생아들은 출생 이후 곧 그들의 부모(혹은 다른 양육자)를 인식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유아들은 그들의 부모 혹은 주요 양육자와 강한 애착을 형성한다. 이러한 관계는 아동에게 지속적인 돌봄과 관심 뿐만 아니라 신체적 및 정서적 안정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아동은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기술과 지식 및 행동을 습득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부모(와 그 밖의 양육자)는 유아가 그들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일반적인 통로가 된다.

18. 부모의 역할 존중

(중략) 위원회는 당사국이 부모가 그들의 아동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아동의 양육에 있어서 해로운 박탈, 혼란 및 왜곡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하여 부모가 그들의 책임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며 유아의 복지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경우에 조치를 취하는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독려한다. 당사국의 전반적인 목적에는 유아의 최선의 이익인 것으로 결정될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 혹은 다른 형태의 장기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수를 최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기되거나 고아가 되는 유아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포함된다

Save the Children | 8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7호(2005)

V. 유아기 아동, 특히 취약한 아동을 위한 포괄적 정책과 프로그램

25. 출생등록.

초유아기를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는 출생에서부터 시작한다. 위원회는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의 제공이 여전히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주요한 난제임에 주목한다. 이는 아동의 개인적인 정체성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아동은 기본적인 보건, 교육 및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를 거부당할 수 있다.** 생존, 발달 및 모든 아동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에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제6조), 위원회는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당사국에게 권고한다

Save the Children | 9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제1의 고려사항으로 할 아동의 권리(제3조 제1항)에 관한 일반논평 14호 (2013)

33.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아동(들)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적용되고, 협약 또는 여타 인권 조약에 규정된 권리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의 해결책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는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국가가 이행조치를 채택할 때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분명하게 규정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4. "제1의 고려사항이다(shall be a primary consideration)

36.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모든 이행 조치의 채택과정에서 제1의 고려사항이다. **"이다"라는 말은 강력한 법적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어떠한 활동에서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제1의 고려사항으로 평가하고 그것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할지 여부와 관련하여 국가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Save the Children | 10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제1의 고려사항으로 할 아동의 권리(제3조 제1항)에 관한 일반논평 14호 (2013)

39. 여하튼 제3조 제1항이 광범한 상황을 포괄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그것의 적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 일단 평가되고 결정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다른 이익이나 권리(예컨대 다른 아동들, 일반 대중, 부모 등의 이익 또는 권리)와 충돌할 수도 있다.

(중략) **당국 및 의사결정자는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제1의 고려사항으로 채택되게 할 아동의 권리가 의미하는 것, 즉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이며 단순히 여러 고려사항 중의 하나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모든 관련자의 권리를 분석하고 판단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에 더 큰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Save the Children | 11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제1의 고려사항으로 할 아동의 권리(제3조 제1항)에 관한 일반논평 14호 (2013)

1.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a) 아동의 의견

54. 아동이 매우 어리거나 취약한 상황(예컨대, 장애가 있거나 소수집단에 속하는 경우, 또는 이주자 신분인 경우)에 있다는 사실은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아동에게서 박탈하지 않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아동의 견해에 부여되는 비중을 감소시키지도 않는다. (중략)

(b) 정체성

...아동의 정체성은 성별, 성적 지향, 출신민족, 종교와 신앙, 문화적 정체성, 개성 등과 같은 특성을 포함한다. 아동과 청년은 기본적인 보편적 요구를 공유하지만, 자신의 요구에 대한 표현은 각자의 발전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광범한 개인적,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 의해 좌우된다. 자신의 정체성을 보존할 아동의 권리는 협약(제8조)에 의해 보장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 평가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Save the Children | 12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제1의 고려사항으로 할 아동의 권리(제3조 제1항)에 관한 일반논평 14호 (2013)

(c) 가정환경의 보존 및 관계유지

60. 가족의 분리를 방지하고 가족의 결합을 유지하는 일은 아동보호 체계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제9조 제1항 -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아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 에 규정된 권리에 기초를 둔 것이다.(중략)

62. '아동에 대한 대안적 보살핌 지침'은 아동이 불필요하게 대안적 보살핌을 받지않도록 보장하는 것, 그리고 대안적 보살핌이 제공될 경우 이것이 아동의 권리와 최선의 이익에 부응하는 적절한 조건 하에서 행해지도록 보장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재정적, 물질적 빈곤, 또는 그러한 빈곤이 직접적 또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조건은 부모의 보살핌으로부터 아동을 분리시키는 유일한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고 ...가족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로 간주되어야 한다"(제15항).**

Save the Children | 1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 견해(2019)
- 출생등록

위원회는 온라인 출생신고 및 통보 제도 도입을 환영한다. 출생등록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세부목표 16.9를 감안하며, 당사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a)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온라인 출생신고를 포함한 출생신고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b) 모든 아동이 출생 직후 등록될 수 있도록 미혼부가 그들의 자녀를 등록하는 절차를 간소화할 것
(c) 모니터링 체계 수립 등 미등록 출생아동 파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d) 출생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것

Save the Children | 14

2. 베이비박스와 출생등록 및 부모를 알 권리

베이비박스와 비밀출산제

The University of Nottingham(Institute of Work, Health & Organisations (2012). Child abandonment and its prevention in Europe)

- 베이비박스를 통한 아동 유기의 합법화는 비밀/익명출산을 허용하는 메시지
  : 혼자 출산하거나 병원 외 환경에서 출산하는 경향이 있어, 아기와 자신 모두에게 심각한 수준의 위험에 놓일 가능성이 있음. 또한 그들의 출산은 등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의료전문가에 의해 인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짐
-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가기를 원하는 부나 모는 그들이 바라는 정보를 남길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음. 그러나 그렇게 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나, 전문가가 이러한 정보들이 아기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음

Save the Children | 16

베이비박스와 비밀출산제

아이들의 '알 권리 ' 를 위한 인권보호의 이유로 출생신고 의무화는 출생신고 사각지대에 놓인 아기들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위험한 곳으로부터의 유기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사실임.(중략)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일찍이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익명출산법, 비밀출산법 또는 최후의 방법으로 베이비박스를 합법화하여 위험한 곳으로부터의 영아유기를 예방하고 있음"

(양승원(2022).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공청회 자료집, p.14)

1. 출생신고 의무화(통보제)가 아동들의 생명권을 침해하는가?
2. 아동의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비밀출산제/베이비박스 합법화가 근본적인 대책인가?

Save the Children | 17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의 출생 등록 될 권리 침해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2021).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 될 권리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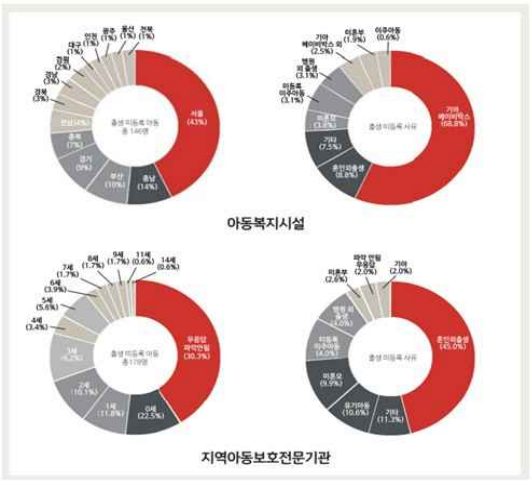

1. 아동복지시설

- 출생 미등록 아동의 75..3%는 베이비박스에서 최초 발견, 다음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8.2%, 지자체 인지 6.8%, 경찰 3.4% 등의 순임
- 출생 미등록 사유의 68.8%가 베이비박스였으며, 다음은 혼인 외 출생 문제가 8.8%임
-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의 출생등록 방법을 살펴보았을 때 기아출생 신고가 77.3%로 가장 많음.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 창설이 16.4%, 친부모에 의한 출생등록은 5.5%임

2.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로 신고된 아동 중 출생 미등록 사유는 혼인 외 출생 45%, 미혼모/미혼부 12.5%, 유기아동 10.6% 등 순임

Save the Children

18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전국 출생신고 실태조사(원자료)

■ 아동이 출생신고 되지 않아, 아동이 겪는 어려움이나 불편한 점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지 못했고 시청에서 임시번호를 부여 받기 전까지는 예방접종 및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으며 영유아 건강검진은 임시번호가 있어도 진료를 받지 못했음"

"생계비, 의료급여 등 아동에게 적법적으로 전달 가능한 자원의 폭이 좁아진다"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어려움. 영유아 검진조차 못 받음"

"영유아일수록 제 때 제 시기에 맞는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아동의 건강상 위급 상황 발생 시 의료보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이 있음"

"병원의무기록을 받을 수 없음(조산아로 입퇴원이 잦았는데 시설 입소 전 타병원 진료기록을 받지 못함). 디딤씨앗 통장을 만들 수 없다"

"병원진료에 어려움. 19년에 입소한 아동은 손가락이 2개밖에 없어 장애등록을 해야하는데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Save the Children

19

익명출산이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 The German Ethics Council(2009)

어린이의 경우 부모(또는 적어도 생물학적 어머니)와 같은 생물학적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그들이 인도된 상황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아이들의 정체성은 그들의 부모나 어머니에 의해 낯선 사람의 돌봄에 넘겨진 근본적인 경험에 의해 강하게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종종 심각한 트라우마, 자존감 결여, 반복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많은 경우 관련 아동의 죄책감으로 이어진다.(p. 33)

Save the Children 20

독일윤리위원회(2009)
Deutscher Ethikrat(2009). Anonymous relinquishment of infants: tackling the problem. Opinion.

영유아의 익명 포기를 위한 시설의 가용성은 실제로 생명 보존의 윤리적 원칙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 현장 및 연구의 증거 평가는 이러한 시설의 사용으로 인해 많은 경우에 **허용되는 아동 친자 관계의 익명화로 인한 법적 보호 대상에의 피해 및 개인 피해(개인 및 사회적 정체성 문제)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에 따라 신생아의 살해 및 유기가 방지된다는 가정은 반박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익명의 영유아 포기를 위한 시설의 가용성이 **한 명의 어린이라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의 정당성은 그 가능성이 법적 보호의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손상과 달리 연관되지 않을 때만 설득력이 있다**.

(중략) 아동의 생명권과 타인의 인격권과 비교하는 아동의 인격권에 대한 상대적 윤리 평가는 관련 시설이 없을 경우 생명권에 대한 위협이 추정된다는 단순한 추측에 근거한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이 경우, 아동을 두는 것(baby drop)과 자녀 친자 관계의 익명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아동, 부 및 아마도 모의 인격권에 대한 실제적이고 명백한 침해가 훨씬 더 중요하다.(독일 윤리위원회, 2009, pp. 82-83)

Save the Children 21

독일윤리위원회(2009)

Deutscher Ethikrat(2009). Anonymous relinquishment of infants: tackling the problem. Opinion.

영유아의 익명의 포기를 위한 시설의 제공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의는 익명의 출산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면 모든 포기된 영아가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또한 관련 아동의 적어도 대다수가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없다. 대신, 문제의 권리는 다른 잠재적 위험에 처한 아동 또는 소수의 다른 잠재적 위험에 처한 아동을 구할 수 있는 목적으로 제한된다. ("하나의 생명만 구해도 이미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는 자신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제3자 아동의 해당 권리가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종류의 "기본권에 관한 연대"에는 엄격한 요구 사항이 적용된다. 법적 보호의 다른 대상에 대한 보호가 상당히 증가한 경우에만 이러한 논의는 정당화될 수 있다. (독일 윤리위원회, 2009, p.69)

Save the Children | 22

독일 정부의 신뢰출산제 평가보고서

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 (2017).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the law on the expansion of assistance for pregnant

-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신뢰출산제법 시행 이후 여전히 많은 산모가 신뢰출산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하거나 신뢰출산 이용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가 있어 여전히 익명출산이나 아동을 베이박스에 유기하는 경우가 지속됨
- 질적 연구들은 익명으로 남기를 원하는 여성들은 정보의 부족보다는 신뢰 출산의 이로운 점보다 익명의 형태로 아동을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을 개인적으로 더 낫다고 판단하여 익명출산이나 베이비박스에 유기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고 보고함
- 신뢰 출산 상담을 받은 여성들은 실제로 신뢰 출산을 선택하기 보다 일반적인 출산을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고 보고됨
- 아동의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익명 출산 제공에 있어 중요한 것은 상담의 질과 네트워킹을 지속하여 익명 아동 유기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할 것임.

Save the Children | 23

국가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 정체성에 대한 권리

■ 대한민국(2019), 정체성에 대한 권리

23. 위원회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면서 익명으로 아동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 하고,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 네덜란드(2015), 정체성에 대한 권리

34. 위원회는 아동의 익명 유기를 허용하는 소위 "베이비박스"의 설치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가 명시한 바와 같이 베이비박스에 아동이 배치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히 아동이 자신의 출신을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35. 위원회는 당사국이 "베이비박스" 이니셔티브를 가능한 한 빨리 근절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 대신에 원치 않는 임신과 아동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특히 가족 계획 서비스, 상담 개선, 계획되지 않은 임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통해 " 관련 대안을 강화해야 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신뢰 출산 병원 가능성을 도입하는 것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Save the Children | 24

국가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 정체성에 대한 권리

■ 독일(2014)

30. 신규로 베이비박스를 설치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과 익명의 출산에 대한 규제 계획, 신생아 유기를 줄이기 위한 임산부 또는 최근 출산한 여성에 대한 지원 제공에 주목하면서도 위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박스에 대한 규제의 부재와, 협약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9조를 위반하는 베이비박스의 관행의 지속을 우려한다.

31.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의 익명 유기 관행을 종식시키고 대안을 조속히 강화하고 촉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프랑스(2016) 아동의 알 권리와 부모에 의해 보살핌을 받을 권리

33. 위원회는 아동이 생물학적 부모와 형제자매를 알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재차 권고하고 다음과 같이 부모에 관한 모든 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아동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시기에 부모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CRC/C/FAR/CO/4 및 Corr.1, para. 44 참조).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친모의 신원 공개에 대한 동의 요구 사항을 제거하고 부모가 비밀 출산을 선택하게 하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Save the Children | 25

유럽에서의 아동유기와 예방

The University of Nottingham(Institute of Work, Health & Organisations (2012). Child abandonment and its prevention in Europe)

Table 5. Risk factors for child abandonment within the EU

This list has been compiled based on information from professionals working in this field and empirical evidence collected across all 10 of the partner countries taking part in the project (Bulgaria, Czech Republic, Denmark, France, Hungary, Lithuania, Poland, Romania, Slovakia, UK). The risk factors identified can be grouped into child characteristics, caregiver characteristics, family characteristics and societal factors.

Child characteristics
1. Child disability/health problems

Caregiver characteristics
2. Negative childhood experiences/poor parenting model
3. Substance misuse/addiction
4. Parental mental health problems/illness
5. Young mother (often in the care system herself or lacks family support)
6. Unwanted pregnancy
7. Lack of education (general education and sex education)

Family characteristics
8. Child maltreatment
9. Domestic violence
10. Lack of material resources/poverty
11. Poor living and social conditions
12. Single parenting
13. Large family/large number of children
14. Lack of social support or social isolation/exclusion
15. Parental imprisonment
16. Roma families/ethnic minority

Societal factors
17. Poverty and unemployment
18. Lack of education
19. Inaccessibility of contraception
20. Lack of well-trained, well-resourced professionals
21. Lack of effective policy and practice
22. Cultural beliefs and norms regarding abandonment and institutional care

EU 내에서의 아동유기 위험요인

1. 아동 특성
2. 보호자 특성
3. 가족 특성
4. 사회적 요인

"아동의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베이비박스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유기 위험요인을 위한 사회적/정책적 제도개선과 문화적 규범이 변화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은 충분한 연구와 통계를 통해 아동 유기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있는가?

익명출산제도의 도입이나 익명으로 아동을 유기하도록 하는 것의 합법화가 아동을 유기하는 것을 예방하는 실증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Save the Children

26

신생아 유기를 예방하기 위한 권고 中
- The EU Parliamentary Assembly report(2008)

2008년 아동 유기 방지에 관한 EU 의회 보고서(Hancock, 2008)에는 신생아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10가지 권장 사항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권장 사항은 사전 예방적 정책이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1. 의료진이나 정부 당국이 어머니에게 자녀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금지한다.
2. 익명출산의 불법화 또는 합법화 방지. 반면에 어머니는 원할 경우 자신의 신원을 보호할 권리가 있어야 하지만, 아이는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가 박탈되어서는 안 되며 부모를 추적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3. 출생 시 모든 어린이의 등록을 장려한다. 등록은 무료여야 하며, 보조금과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하며, 자녀가 태어날 때 지불해야 하며 추가 보육 및 유지 보조금이 제공되어야 한다.
4. 입양을 위해 신생아를 포기하는 명확한 절차를 도입한다. 어머니는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을 가져야 하며 가능한 한 아버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국내 입양이나 국제 입양이 아동의 뿌리를 추적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5. 산모와 아기가 분리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임산부와 젊은 산모에 대한 의료 및 사회적 지원을 제공한다.
6. 어머니가 이용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 또는 기타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7. 어머니와 아동을 위한 임시 숙소 및 돌봄 센터 활성화

출처: The University of Nottingham(Institute of Work, Health & Organisations (2012). Child abandonment and its prevention in Europe), p. 61

Save the Children

27

유럽에서의 아동유기와 예방

The University of Nottingham(Institute of Work, Health & Organisations (2012). Child abandonment and its prevention in Europe)

■ 아동유기 예방을 위한 모범사례(best practice)들의 테마

-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위한 지원 및 개입
- 장애 아동,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발달 지연/발달 장애 아동이 있는 가족을 위한 지원
- 가족의 지원이 없는 어린 부모에의 지원
- 아웃리치(지원활동)
- 거주의 비밀보장이 가능한 센터
- 일시적인 돌봄
- 엄마 수형자와 아기 거주 지원
- 아기/자녀를 버리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거나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부모와 직접적인 직무(상담, 치료적 지원, 가족지원 등)
- 물질적, 재정적 가이드와 지원
- 아동을 시설이 아니라 원가정으로 돌아가도록 지원 초점
- 시설 내 아동에게 지원과 치료적 지원 제공
- 전화상담서비스, 정보, 교육과 법적 자문

Save the Children | 28

감사원(2019). 보호대상아동 지원실태 감사보고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 962명 중 929명(96.6%)이 임시보호되다가 아동양육시설 등 시설로 보호 조치되었고,
임시보호 이후 가정 보호로 조치된 아동은 33명(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p.27)

[표 9]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에 대한 최초 보호조치 현황

(단위: 명, %)

가정보호조치			시설 보호조치				계
입양	가정위탁	소계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기타주)	소계	
20 (2.1)	13 (1.3)	33 (3.4)	15 (1.6)	907 (94.3)	7 (0.7)	929 (96.6)	962 (100)

주: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병원 등
자료: 복지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제출자료 재구성

Save the Children | 29

감사원(2019). 보호대상아동 지원실태 감사보고서

시설별 변경조치 현황 분석

-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929명)이 최초 보호조치된 77개 시설 중 46개 시설에서는 입양이나 가정위탁으로의 변경 조치가 없었고
  - 입양 조치가 이루어진 시설은 [표 11]과 같이 총 29개(37.7%) 시설로 이 중에서도 입양 조치 상위 5개 시설이 전체 입양 조치된 아동의 53.2%(59/111명)를 차지하는 등 시설별로 입양 조치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입양 조치 상위 5개 시설 중 2곳은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에서 운영

[표 11] 시설별 입양 조치 현황

(단위: 개소, 명, %)

구분	시설 수	입양아동 수	입소된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 수	입양 조치 비율
입양 조치 상위 5개 시설주)	5	59	161	36.6
이 외 입양 조치 시설	22	52	540	9.6
계	29	111	701	15.8

주: △△(15명), ▷▷(15명), ▽▽(11명), ◁◁(9명), ◇◇(9명)

자료: 복지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제출자료 재구성

- 또한 가정위탁 조치는 5개(6.5%) 시설에서만 이루어졌고, 이 중 3명 이상 변경 조치한 시설은 1개 시설(성심원, 12명)뿐인 것으로 나타남

-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이 최초 보호조치된 시설에서 59.7%는 입양이나 가정위탁으로의 변경 조치가 없었음
- 베이비박스에 가정위탁 조치는 5개 시설 뿐으로, 6.5%에 지나지 않음

■ 감사결과 요약: 1. 보호대상아동 발생대응 체계 분야

"보호대상아동 업무처리 매뉴얼에 입양은 부모가 의뢰한 아동에 대해서만 절차를 정하고 부모가 없는 유기아동은 시설보호만 제시하는 등 보호조치 간 우선순위에 따른 처리절차가 없고 또한, 시설로 보호조치된 아동에 대한 입양·가정위탁 등의 변경조치를 위한 절차 등도 없어 시설로 보호 조치된 아동에 대한 가정보호로의 변경 조치가 시설장 등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실정"

Save the Children | 30

세이브더칠드런

발제3

베이비박스와 미혼모의 인권: 누구를 위한 베이비박스인가?

최형숙(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1. 들어가는 말

2009년 설치된 베이비박스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라는 명분으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 '미혼모'와 '베이비박스'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유기'와 관련된 기사는 급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혼자 아이를 낳아 양육하고 있는 많은 미혼모들의 일상에 또 다른 편견을 만들기에 충분했다. 무책임한 여성, 비정한 모정 등 언론에서 쏟아지는 이러한 차별적인 단어들은 임신 중인 대부분의 미혼모들이 아이를 포기하게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2022년 8월 "위기영아보호상담센터"라는 명칭으로 제주도에서 한국형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하였다. 그들의 주장은 "위기영아보호상담센터"라는 명칭으로 포장을 하였을 뿐이지 기존의 베이비박스를 제주도에 설치하는 것이었다. 아이를 놓고 가는 베이비 룸이 있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한국형 베이비박스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미 공적 영역인 시설, 기관, 단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제도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한국형 베이비박스라는 또 다른 명칭으로 베이비박스를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 사회에서 베이비박스가 많은 문제에 직면한 미혼모들에게 최후의 안식처도 마지막 보루도 아닌 것을 이 자리에서 증명해 보려고 한다.

2. 베이비박스와 미혼모

베이비박스에 맡겨지는 아동의 대부분이 미혼모의 아이들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베이비박스가 아동 유기와 살해를 예방한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정보가 아니다. 임신과 출산이라는 과정을 겪으며 몸과 마음이 가장 힘든 시기에 자신과 아이

의 삶을 결정해야 하는 여성에게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미혼모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편견과 주변의 시선들이 오히려 아이를 양육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아야 한다.

아직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는 여러 건의 상담 사례들이 있다. 이들의 인권을 위해 자세히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감추고 보호되는 것만이 아이와 엄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몇몇 사례를 공유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사례자 A씨의 내용은 2015년도 싱글맘의 날 자료에 실린 것으로 2014년 본인이 직접 상담한 사례이다. 2022년도 지금은 인트리를 비롯해 몇몇 미혼모단체들이 출산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고 위기 지원도 하고 있지만 2014년도 당시에는 상황이 매우 달랐다. 천안에서 대학 재학 중 임신한 사례자 A씨는 주위의 권유로 아이를 2주 정도 베이비박스에 맡겼다가 다시 찾아와 지금까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이다.

2014년 1월 20일 그렇게 제 딸 지혜(가명)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본인도 혼자 아들 둘을 키웠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냐며 저의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입양을 보내자고 하였습니다. 이미 저는 남자친구의 거짓말에 희망을 버렸었고 많은 고민을 하였기에 남자친구 엄마의 말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아이를 잠시 맡아주는 곳이 있으니 몇 년만 맡겼다 대학을 졸업하고 남자친구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시 찾아와서 함께 키우라고 그렇게 간절히 설득하셔서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맡겼습니다. 잠시 상담을 하고 나오니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어떤 분의 명함을 주셨고 아이를 두고 돌아와 꼬박 이틀을 물 한 모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젖은 불어서 단단한 돌덩이 같고 너무 아픈데 자꾸 아기의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명함을 찾아 전화를 하고 2주 만에 다시 아이를 찾아왔습니다. (사례자 A)

그때 당시 인트리는 아직 상담 진행에 사업비가 없던 때였고 사비를 털어 아이 옷

한 벌을 사서 찾아갔었다. 그 당시 보일러도 틀지 못하고 전기장판에 누워 있는 사례자 A씨에게 수급자 선정 방법을 알려주었고 적은 돈이었지만 매달 5만원을 보내며 꼭 보일러를 틀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바로 복학을 해서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아이가 돌이 지나고 복학을 하였습니다. 저는 학교가 너무 가고 싶었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다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학교에 가면 약 40분이 걸립니다. 아이가 아프면 수업을 빠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수업 도중에 아이에게 가야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이가 어리다고 오후 4시면 데리고 가야한다고... 그래서 저는 다시 휴학을 했습니다. 언제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올해는 꼭 복학하려고 했지만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많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아직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내년에는 꼭 복학을 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사례자 A)

대부분의 청소년미혼모들이 겪는 사례로 일과 양육 그리고 학업을 병행하기 힘든 문제들이었다. 그 당시만 해도 정보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더욱더 정보를 알 수 없었다. 또 아이가 아프거나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 전달체계도 잘 갖추어지지 않았던 때 이기도 하다. 그리고 사례자 B씨 또한 2016년도 사례이지만 2014년도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사례자 B씨는 당시 상담일지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사례자 B씨는 당시 26세로 2016년 임신 중 긴급지원으로 상담하였고 수원 00병원에서 출산 후 본인이 거주하는 집으로 아이와 돌아왔다. 빚이 있는 상황이라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온다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거주지를 마련해 주었으나 베이비박스와 상담을 하고 아이를 맡겨두고 입양을 보내기로 했다고 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베이비박스에서 입양이 어렵다고 설명을 하니 아이를 다시 찾아와 출생신고를 마치고 시설에 입소한 케이스였다. 베이비박스에서 입양을 연계하지 못하고 다시 아동보호시설로 가는 문제는 지금까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베이비박스로 들어오는 아동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사례자 A씨의 문제는 청소년미혼모의 학습권에 대해 사

회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하는 것이라면 사례자 B씨의 문제는 출생등록과 주거문제 그리고 채무의 문제 등이 얽히고설킨 사례로 아이를 베이비박스로 보내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저변에 깔린 문제를 감추고 은닉하는 것이었다.

또한 사례자 C씨의 경우는 2020년 상담자로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주위에 알리지 못하고 남자친구와 상의 후 출산 후 입양 보내기로 하고 인터넷 검색으로 베이비박스를 알아보았다고 한다. 출생신고의 부담이 컸고 남자친구도 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기려고 할 때 무엇보다 아이를 몰래 버린다는 죄책감으로 힘들었고 정보를 알아보고 찾던 중 베이비박스의 아이들은 입양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고 출생 전에 입양기관 상담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출산 이후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상의를 하고 아이는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고 부모님이 양육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처럼 2020년 당시에도 입양을 검색하면 베이비박스가 검색되었다는 것은 온라인상의 정보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며 이는 입양을 담당하고 있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책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는 출생신고에 대한 전 국민의 의식이 높아지고 아동인권이 기본권으로 인식되어 원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었던 사례였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앞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베이비박스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최후의 보루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베이비박스에 대한 정확한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고 사례에 따른 문제 해결에 대한 각 부처의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시에서 공적 지원을 받고 있는 베이비박스는 들어간 아이들 중 80%가 성인이 될 때까지 시설에서 살아간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았을 때 베이비박스는 아동이 원가정에서 자라야 한다는 첫 번째 원칙과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 그리고 입양되어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2022년 8월 23일 제주도에서 열린 베이비박스 설치 조례제정에 관한 공청회 자료를 보면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데려다 놓는 사람들 중 96%는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96%의 아이의 부모를 알고 있다는 것이며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상황(강간, 외도, 근친, 불법이주노동자)을 제외하면 출생신고는 이루어져야 한다. 결혼하지 않고 임신을 하는 여성들이 베이비박스가 아닌 다른 공적기관, 시설, 상담센터 및 단체에서 상담을 했을 때 오히려 건강하

게 출산을 하고 자신과 아이의 삶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수 있다. 베이비박스로의 유입을 위한 아이와 생모의 단절이 우선이어서는 안된다. 위의 사례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단체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적절한 상담과 도움이 있다면 많은 이들이 원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고 출생신고 후 입양을 보낼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제 베이비박스에 아동들이 어떻게 입소를 하고 보호(?)받고 있는지 한 시설관계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베이비박스를 정확하게 이해해보고자 한다.

3. 베이비박스 '이후' 아동들의 실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시설에 근무하는 D씨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베이비박스의 아이들이 시설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성장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베이비박스 아동의 80%가 시설에서 장기 보호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정말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일까?

1) '아이의 부모를 찾습니다' 출생신고가 미루어지는 아이들

베이비박스에서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이들은 출생신고가 미뤄지기 일쑤다. 그리고 이어 이름 대신 '미상'의 아이는 제때 예방접종도 받을 수가 없다.

제가 근무하던 시설은 0세~18세 아이들이 있는 곳이었고, 저는 그중에서도 영아방에서 근무했어요. 입소문의 전화를 받은 사무실 직원이 저희 방으로 찾아와 입소할 아이의 대략적인 인적사항과 입소 날짜를 알려줬어요.(인터뷰 D씨)

대부분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된 아이들이 입소했는데, 저희는 아이의 건강도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러 가야 합니다. 출생신고는 언제 되나요?"라고 물으면 "아직 아이의 공고가 끝나지 않아서 기다려야 한다."는 얘길 들었어요. 무슨 공고인지 물으니, "이 아이의 부모를 찾는 공고"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때, '그게 먼저가 아니라 출생신고를 빨리 마쳐야 예방접종도 하고 갑자기 아프면 진료도 받을 텐

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인터뷰 D씨)

2) '미상'의 아이는 예방접종이 어렵다.

이 아이의 '부모'를 찾는다는 공고를 올려놓고, 없으면 그제서야 출생신고를 한다는 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결핵이나 B형 접종, 뇌수막염 등…. 그 많은 예방접종이 과거엔 유료였으나, 무료 예방접종으로 전환되고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예방접종 시기를 모두 놓치는 모습을 보며 안 좋은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될까 봐 항상 걱정했어요. 한 번은 고개도 잘 못 가누는 작은 아기여서 원내 간호사를 따라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진료 동행을 한 적이 있는데, 원내 간호사가 예방접종을 문의하니, "아직 주민등록번호가 나오지 않아서 비용 상환에 애를 먹는다고 주민등록번호가 나온 후 접종하라고 그러더라"라는 얘길 들었어요. 그리고 보육원 근처에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에 갔을 때도, 시설코드로 접종이 불가한지 확인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선생님이 사이트에 시설코드를 조회해보았지만 역시 접종을 할 수 없다고 떠서 결국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고 귀원한 일도 있었어요. 나중에, 주민등록번호가 4개월쯤 나와서 보건소에 BCG접종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자, 항원검사 후 음성이 나오면 접종 가능하다고 그랬다더라고요. 이후에 접종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요.(인터뷰 D씨)

또 어떤 경우에는 발견 당시 종이에 생년월일, 간단한 편지, 입양 허락 문구와 함께 'B형간염 1차 접종 완료'라고 쓰여 있는 아이도 있었지만, B형간염 1차 접종 여부가 적혀있지 않은 아이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 아이는 2차 접종을 언제 해야 하는가에 대해 원내 간호사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던 적이 있는데, 보건소에 전화해서 물으니 "혈액형이 적혀있는 걸 보니 아마 맞은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더라고요. 생명과 직결된 문제 중 하나가 감염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등록번호 하나가 없어서 노심초사 양육해야 하는 거죠.(인터뷰 D씨)

3)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베이비박스의 아이들

아동보호 시설은 그 유형별로 근무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 한 곳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의 인터뷰에 응해주신 D씨의 관점에서 아이들의 환경에 대해 들을 수 있었고 특정 어느 한 곳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아동보호시설에 불철주야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 다만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 태어난 아동이라도 기본적인 인권이 지켜져야 하고 아울러 해외 입양인들의 노력으로 인해 우리가 이제야 비로소 알권리에 대해 주장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혼모의 인권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또 한편으로는 고민이 된다. 그리고 베이비박스 측에서 주장하는 당장 출생등록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안을 낼 수는 없지만 베이비박스가 미래의 대한민국 사회의 대안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은 사실 아무런 죄가 없다.

제가 근무했던 방은 생활지도원 2명이 7명의 아이들을 돌봤어요. 36개월 1명, 약 20개월 2명, 6개월 2명, 4개월 2명. 24개월 이상과 12개월 미만이 같이 살다 보니 일반식을 먹는 아이들은 1층 식당에서 배식을 받아다 차려주고 식사지도하고 설거지를 해야 하고, 그 사이사이 분유와 이유식을 먹는 아이들은 수유하고…. 굉장히 벅찼어요. 이런 일 말고도 보육일지나, 프로그램일지도 써야 해서 굉장히 바쁘다 보니 애들이 조금만 칭얼거리면 언어 표현을 유도하기보다는 즉각 해결해주게 되더라고요. 그 와중에 수유해야 할 시간이 되면, 왼팔에는 한 아이를 안고 제 손목을 꺾은 채 한 손 수유하고, 다른 한 아이는 바운서에 눕혀 벨트를 채운 후 발로 바운서를 흔들어주며 울지 않도록 놀아주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한 아이를 무릎에 앉혀 '둥가둥가'를 해주면, 파트너 생활지도원이 설거지나 빨래를 하며 나머지 4명을 봐야 하고, 이마저도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싶으면 할 일을 미뤄두고 거실에서 자유 놀이를 해요.(인터뷰 D씨)

업무는 점점 쌓이고, 중간중간 기저귀 교체, 낮잠 재울 시간이 되면 점점 늦춰지고, 퇴근도 늦어지고 그래요. 교대 자들에게 부탁할 수가 없어요. 그들도 그러다가

아이들이 서로 싸워서 생채기라도 내면 아동학대 오해를 받으니까 결국 하이체어에 아이들을 앉혀놓고 TV를 틀어주는 거예요. 아이들도 행복하지 않고, 생활지도원들도 행복하지 않은 일과가 매일매일 반복돼요. 그래서인지 저희 방 아이들은 모두 발달이 느리다는 생각이 들었고, 직원 대부분이 느리다고 평가했어요. 20개월 아이가 할 수 있는 단어가 '음마' 하나였고,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한 번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다가 '이모(생활지도원)'가 알아듣지 못하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어버렸어요. 함께 자유 놀이를 할 때면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각자 자기가 갖고 놀고 싶은 장난감을 가져다가 제각각 흩어져서 놀고, 함께 놀 수 있도록 관심을 끌면 그 장난감을 달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때리거나 말없이 빼앗아가고, 빼앗긴 아이는 빼앗아간 아이를 쫓아가 깨물고 때려요.(인터뷰 D씨)

생활지도원들 마다 훈육 방식에 차이가 있다 보니 아이들은 혼란에 빠지고 이런 모든 상황이 아이들의 발달을 촉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마당에 나가서 바깥놀이 해줄 틈도 없이 하루가 휘몰아쳤으니까요. 그나마 사무실이나, 큰 방에 사는 형아들이 한 번씩 바깥놀이를 나가줘야만 가능했고, 감기가 크게 걸려야만 3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 병원 진료 때나 나갈 수 있었어요. 물론 아닌 시설도 있겠지만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 보육원이 그렇게 많을까 싶어요. 대학 동기들과 자주 연락하는 편인데 "너희 보육원에서 가장 애기가 많이 나오는 게 뭐야?"라고 물으면 "사람 부족하다고 더 뽑아달라는 거지, 뭐."라는 답변이 압도적인 1위거든요.(인터뷰 D씨)

베이비박스 아동들이 시설로 옮겨진 후 실제로 아동들을 보살펴온 시설 생활지도원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생각보다 더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출생신고의 중요성은 또 한 번 강조 할 수밖에 없으며 아동이 태어남과 동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한다. 이는 태어난 아동의 생명권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의 출생등록 방법을 보면 기아 출생신고가 77.3%로 가장 많다고 한다. 이러한 통계들이 베이비박스가 아동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유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결과인 것이다.

4. 마무리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해외입양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한국전쟁 혼혈 아동을 '아버지의 나라'로 돌려보내기 위한 비상시 임시 조치로서 시작된 해외입양은, 시간이 흐르며 상설 제도로 자리 잡았다. 입양 대상 아동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상황에 있는 여성, 특히 미혼모의 자녀를 향했다. 가부장적 가족문화, 법률혼 중심주의, 여성의 피임이나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 문화 속에서 결혼제도 밖 여성의 출산은 입양 산업으로 흡수되었다. 그리하여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임신한 여성들은 시설로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출산을 하고, 아이를 입양 보내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면서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들을 국가는 철저하게 외면하였다. 낙태는 불법이었으며 미혼모로 출산을 하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며 입양을 종용당했다. 여성들이 겪은 정신적인 고통은 상상조차 힘들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익명출산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여성이 자신 스스로 임신중단을 선택할 수 있어야하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결정도 여성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생산권 역시 낙태죄는 사라졌지만 현재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임신부는 물론 산부인과 의사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42]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미혼모들과 여성들에게만 질타를 할 수 있는가? 그들이 아이를 버린 게 아니라 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하지 못하는 사회가 더 문제는 아닐까?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질타한다. 미혼모들은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으니 입양 보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말한다. 입양을 보내기 위해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데려다 놓아도 사람들은 아이를 버린 비정한 엄마라고 손가락질 한다. 결국 미혼모들은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결정하거나 아이를 입양 보내겠다고 결정하거나 어느 쪽으로 결정을 하여도 사회로부터 받는 것은 비난뿐이다.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죽지 않은 자식을 가슴에 묻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많은 입양을 보낸

42) '낙태죄' 사라졌지만 임신부, 산부인과 의사 여전히 혼란스럽다(2022.1024), 한겨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지난해 1월부터 '낙태죄' 처벌 조항의 효력이 사라졌지만, 대체입법과 가이드라인 부재로 임신중지를 원하는 임신부는 물론 산부인과 의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11494?sid=102

부모들이 있다. 그리고 어렵게 입양을 해서 키우는 분들도 있고 실제 입양 당사자들과 해외입양 당사자들 모두 국가의 제도 속에서 만들어진 집단들이다. 이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하며 이제부터라도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현실적인 지원제도와 함께 보편적 돌봄 그리고 위계와 차별없는 가족제도 등 해결되어야 할 산적한 문제들이 많다. 여성의 임신은 숨겨야 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임신을 중단할 권리, 출산하고 양육할 권리, 입양을 보낼 권리 이 모든 선택지 안에 국가는 여성과 아동을 제대로 보호해야 한다.

발제4 입양인 시각에서 바라본 베이비박스와 입양

민영창(국내입양인연대 대표)

1. 입양인의 눈으로 본 입양의 역사

제주도에 베이비박스의 추가설치에 대한, 베이비박스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입양의 역사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입양은 1950년대 6·25전쟁으로 등장한 전쟁고아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전쟁 중에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들을 우리사회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해외입양도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최초의 입양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고아를 입양하는 절차를 간소하게 할 목적으로 제정된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입니다. '고아입양 특례법'을 제정해가면서까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 보호보다는 해외 입양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전가"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우리나라의 입양은 1960년부터 변화를 가져오는 데 첫째, 외국으로 입양 보내는 전체 아동 가운데 혼혈아의 비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둘째, 196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의 입양은 국내 입양이 아닌 해외 입양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1976년 '고아입양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고아"라는 용어 대신 "보호시설에 보호받고 있는 자"로 바꾸어 고아가 아닌 아동도 입양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입양은 소위 "입양산업"으로 변화했고 1980년대 절정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1995년 1월5일 법률 제4913호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다시 명칭을 변경했고 2011년 중앙입양원 설립을 골자로 한 "입양특례법"으로 개정되었고 2019년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을 골자로 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양은 현행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2012년 이전과 이후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이전의 해외입양과정에서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출생기록의 생성, 출생기록의 조작 등 입양기관의 주도하에 출생기록에 대한 광범위한 개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2012년 이전 해외입양은 친생부모를 알고 모름을 떠나서 독립된 호적을 만들어 '부모를 알지 못하는 아동', 즉 고아로 재 탄생시켜 보냈고 국내입양은 친생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양부모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양기관과 국가는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하였으며 입양인의 인권은 침해되었습니다.

2011년에 개정된 현행 입양특례법은 국가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입양원을 설립하였고 두 가지의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입양기관과 입양부모의 합의에 그쳤던 입양을 "가정법원의 허가"를 필수로 하였습니다. 둘째, 허가 과정에서 "출생신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입양을 보내고자 하는 친생부모는 반드시 아동의 출생신고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가족관계법 상 "아동의 출생신고 의무"를 어겨왔던 관행을 바로잡는 것과 동시에 입양인의 기본적인 인권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2. 아동 유기의 장소, 베이비박스의 등장

2012년 이후 입양대상아동(친 생부모가 입양을 의뢰한 아동과 유기된 아동) 중 대다수의 친생부모는 입양특례법에 의해 아동의 출생신고를 한 후 입양을 의뢰하였습니다. (2019년 기준 약 78%)

하지만 과거의 관행, 사회적 시선 등을 이유로, 또한 현행 가족관계법 상 출생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를 이용하기 시작하였고 베이비박스가 알려짐으로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아동을 유기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현재의 베이비박스가 우리의 머리 속에 각인된 이유는 베이비박스의 엄청난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베이비박스가 만들어진 초기부터 우리 입양당사자들은 베이비박스의 설치 운영을 반대해 왔지만, 베이비박스의 엄청난 기사 노출도 때문에 오히려 유명해져 버렸고, 위기 임산부들 사이에서 아이를 쉽게 유기할 수 있는 유명한 장소로 알려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베이비 박스가 아무리 생명을 지키는 곳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베이비 박스는 대한민국 법률과 유엔인권이 정하는 미인가 불법 시설입니다. 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3. 8. 20. 보건복지부의 보도해명자료를 보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소개하면서 베이비박스는 형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영아유기)죄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이비 박스는 친생부모의 의무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조장, 방조하고 있습니다.

2)「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 "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돼야 하고, 가능한 한 자기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베이비박스의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대한 위반사항〉

아동의 부모가 누군지 알 수 없는 베이비 박스의 익명성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를 위배한다. 또 베이비 박스에서 발견된 아동이 그들의 뿌리(태생)에 대한 정보를 얻을 합당한 방법이 없다는 것 역시 자기들의 정체성을 가질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8조 1항의 내용과 위배된다.

때로는 아동이 친부모와 분리되는 일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친부모와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줄 의무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베이비박스는 친부모 접촉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협약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또 자격 있는 관계 당국이 각 사례의 특성을 고려해 아동이 친부모와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동의 최상 이익'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하는데 베이비 박스는 여기 명시된, 부모와 분리가 필요한 특별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 협약 당사국은 아동을 모든 형태의 학대·폭력·방임·유기, 태만한 처우로부터 보호

하기 위해 적절한 입법·행정·사회·교육적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무리 베이비 박스의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아동을 친부모로부터 분리하거나 방임을 조장할 수 있는 베이비 박스는 이 원칙에도 위배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베이비 박스 자체보다 영아 유기다. 베이비 박스나 이와 비슷한 방법은 오히려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근본적이고 장기적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영아 유기 방지를 위한 우리의 우선 과제는 책임감 있는 선택과 올바른 성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정보, 지원 방안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혼부모의 사생활 보호만큼 아동이 훗날 자기 뿌리를 찾고자 할 때의 대책도 중요하다. 모든 아동의 생존권이 존중되고 가능한 한 친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지원 정책과 사회 안전망, 인식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모든 부모는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 의무조항이 있고, 「민법」에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친권은 임의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3. 해외입양인들의 인권침해 사례와 국내입양인, 입양부모의 입장

최근 해외입양인들의이 과거 입양제도 아래에서 행해졌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70, 80년대 조작된 출생기록을 통해 해외로 입양된 300여 명의 입양인들이 대한민국정부(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상대로 해외입양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2022.09.13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91313111670457)

그동안 해외입양인들은 자신들을 입양 보낸 입양기관을 찾아 본인들의 출생기록과 입양과정에 대한 기록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모호한 법률규정을

내세우며 번번히 입양인의 출생기록의 온전한 열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984년 초등학교 6학년때 프랑스로 입양된 김유리씨는 자신의 친부모의 이름과 한국에서의 삶을 모두 기억할 수 있는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양서류에는 고아로 기재되어 입양되었습니다.

1974년 덴마크로 입양된 루이스 광은 친어머니를 찾는 과정에서 고아라고 생각했던 자신에게 친부모에 대한 정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에서만 보아도 민간기관에 의해 해외로 입양된 입양인들은 자신의 출생기록을 온전하게 전달받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존재하는 전달받은 출생기록, 입양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입양을 담당했던 민간기관이나 담당자들에 의해 조작, 은폐된 출생기록을 통해 해외로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민간기관의 주도로 진행된 입양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의 사례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입양기관에서의 입양절차에서도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베이비박스는 국가에서 인정한 아동보호시설도, 입양기관도 아닙니다. 그러한 불법시설에서 아이들이 인권이 잘 지켜지고 출생기록이 온전하게 보전될지 잘 지켜질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계 덴마크 입양인 마야 리 랑그바드는 자신의 성장과정을 담은 〈그 여자는 화가 난다〉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H아동복지회의 홈페이지에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정되고 확실한 입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가 중 하나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 “한국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이 민영기관에 의존한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 “입양가정의 부모들이 사실 부모가 있는 아이를 입양해 놓고 고아를 입양했다고 믿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국내입양인의 사례에서도 드러납니다. 자신의 출생기록을 알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국내입양인들(제 자신을 포함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자신의 출생기록과의 전쟁은 죽기 전에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입양부모의 입장에서 아동의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두 가지의 우려가 있습니다. 첫째, 아동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유전적인 병력이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입양부모는 입양 아동을 '건강한 입양 정체성을 가진 입양인'으로 성장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 토대는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와 입양인의 출생에 관한 정보입니다. 이것이 보장될 때 안전하고 건강한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입양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저희 입양인 당사자들이 베이비박스가 현행 입양특례법 이전의 체제, 즉 친생부모와 입양인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체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베이비박스가 입양인의 출생 정보를 파기, 훼손함으로 인해 입양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부도덕한 곳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님께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미혼모를 상담하고 그들을 지원하겠다는 명분 아래서 베이비 박스를 "위기영아 보호상담지원센터"로 확대 강화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시고 베이비 박스의 문을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부는 입양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1년 6월 30부터 위기아동이 발생하면 아동보호전담요원을 투입하여 원가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위기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생부모가 입양을 원하면 입양특례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었을지도 모를 아이들이 이제는 공공의 영역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민간에서 따로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에 베이비 박스는 국가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공적 영역이 당연히 해야 했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감시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아동을 진심으로 위하고 아무 사심이 없다고 하신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 에서 베이비박스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출생 등록의 사각지대를 언급하셨는데,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 베이비박스의 정당성이나 보호출산제를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힘을 모아 해당 법률의 개정을 통해 출생 등록의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둘째, 주사랑공동체에서 가지고 있는 아동에 관한 기록을 잘 관리하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는 기록의 주인인 아동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사랑공동체는 베이비 박스에 아이를 맡기러 오는 친생부모의 90% 이상과 면담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는 알고 계시리가 믿습니다. 친생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유기아동으로 신고하고 독립 호적을 창설해주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아동 유기를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베이비 박스에서 입양된 아동이거나 또는 시설에서 자라는 아동들이 이제 10대에 접어들었고 머지않아 그들이 성년이 되어 자신의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소송을 걸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내입양인연대에서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출생사실을 숨기려는 산모의 권리가 존중받을 때 아동의 권리는 침해를 당합니다. 입양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까지 베이비 박스가 아동의 생명을 살린다고 주장하셨는데 기독교 목사님 입장에서 육신의 생명만이 생명이고 영혼의 생명은 생명이 아니라고 믿고 있지 않으시겠지요. 아동의 출생을 비밀로 하면 아동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출생이 부정적인 것이 되고 자신이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존재가 돼 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아동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아동들에게 '너희는 지켜진 아이다.'라고 세뇌시키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입양인들은 자신들이 버려졌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이는 영혼을 육체보다 더 중요시 생각하는 기독교의 본질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에게 당연시되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은 생명의 탄생부터 출생, 양육에 이르는 과정은 우리 입양인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것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정적인 기록이던 긍정적인 기록이던 우리들 삶의 소중한 한 부분이며 이것이 공백으로 남을 때 우리들의 삶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입양인과 국내입양인인 우리들 삶의 일부를 감추고 훼손하는 베이비박스는 마땅히 없어져야 합니다.